

충청북도세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 3.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3. 14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2002. 12. 30 공포, 법률 제6838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 중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20톤 미만의 선박에서
⇒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규정하여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의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38호)에 따라 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2002. 12. 30 공포, 법률 제6838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중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20톤미만의 선박에서
⇒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규정하여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함.

 의안전문 : 따로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새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20톤미만 선박등록” 을 “소형 선박등록” 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20톤미만외 선박” 을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20톤미만 선박등록의 세율)	제34조(소형 선박등록의 세율) 선	제34조(소형 선박등록의 세율) 선	제34조(소형 선박등록의 세율) 선	제34조(소형 선박등록의 세율) 선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134조(20톤미만 선박등기의 세율)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 개정 지방세법 (2002. 12. 30 공포, 법률 제6838호)

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 개 정 ▷

○ 선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機船)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帆船)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桴船)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제26조의2(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내에 선적함을 정하고 당해 선적함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2.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
3. 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제외한다.